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주)제이비케이랩(이하 “갑”이라 한다)과 김 의 신(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동기술개발 계약을 체결한다. (이하 “본 계약”)

제 1 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기술개발을 함께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동기술개발의 목표 및 과업범위)

-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목표는 ‘후코란의 개발 논리와 아로니아와 후코이단의 배합논리, 배합비율, in vitro, in vivo 평가, 최종시제품 생산, 평가’ 업무 수행으로 한다.
- ②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과업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후코란의 개발 논리 확립
 2. 아로니아와 후코이단의 배합 논리 및 비율 연구
 3. in vitro 및 in vivo 효능평가를 통한 최종시제품 생산 및 평가

제 3 조(공동기술개발기간)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기간은 2022 년 8 월 21 일 부터 2023 년 8 월 20 일까지로 한다. 다만,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공동기술개발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제 4 조(공동기술개발의 역할)

① “본 계약”에 따른 “갑”의 역할은 총괄 관리, 자금 조달 및 연구 성과물의 상용화 추진 으로 한다.

②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역할은 연구개발 및 기술적 자문으로 한다.

제 5 조(보수, 성과금 및 비용지급)

①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동기술 개발 업무 수행의 보수는 총 오천만원(50,000,000 원, 제세공과금 원천징수)으로 정하며, “갑”은 총 보수액을 “본 계약”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제세공과금 원천 징수 후 “을”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10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의 공동기술개발 성과에 따라, “갑”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의 구체적인 조건과 부여 시기는 양 당사자 간 별도 서면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③ “을”이 공동개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도록 한다.

④ “갑”은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의 및 진행 경과 확인을 위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상호 합의 하에 회의 일정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을”은 공동기술개발 업무 수행 및 완료 후, “본 계약” 종료 30 일 전까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갑”의 요청에 따라 연구 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한다.

제 6 조(신의성실의무 및 정보교환의무)

①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②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 수행시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은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비밀유지의무)

①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과 “을”이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각종 데이터, 경영정보,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수행으로 새롭게 생성되는 연구결과, 기술정보, 지식재산권 등 공동기술개발 성과물 일체를 포함하며,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갑”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수한 일체의 비밀정보를 다른 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 3 자에게 누설하거나 “본 계약”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8 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확인)

① “갑”과 “을”은 공동기술개발기간 동안 매 1 개월마다 1 회씩 중간점검 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 공동기술개발은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을 공동으로 검토하여 상호승인함으로써 완료된다.

③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하자발생시 하자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해당 하자를 시정하여 시정된 성과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 9 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귀속)

“본 계약”에 따른 공동기술개발의 성과물 및 이와 관련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모든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과 영업비밀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 10 조(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실시)

① “갑”과 “을”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은 공동개발 결과물에 대해 독점적인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개발 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 3 자에게 실시권을 양도하거나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③ “갑”은 필요에 따라 “을”에게 개발 결과물의 실시권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실시권 행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별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 11 조(양도의 제한)

“갑”과 “을”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 12 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공동기술개발의 실패)

① “갑”과 “을”은 제 3 조의 공동기술개발기간 종료시 목표한 공동기술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제 3 조의 공동기술개발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또는 실패로 처리할 것인지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 1 항에 의거 "갑"과 "을"이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공동기술개발을 실패로 처리할 경우 "본 계약"은 종료되며, 종료일까지 각자 개발한 성과물은 각자의 소유로 하되 "갑"과 "을"이 상호 합의시에는 공동소유로 한다.

제 14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제 3 조에서 정한 공동기술개발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 8 조 내지 제 10 조의 조항은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지며, 제 18 조 조항은 분쟁해결 기간 동안 그 효력을 가진다.

제 15 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계약의 해지)

"갑"과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0 일의 기간을 두고 시정을 최고한 후에도 이를 불이행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공동기술개발 수행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2. "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본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 17 조(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고,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은 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조정·중재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 23 조에 의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중재

2. 「발명진흥법」제 41 조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

3.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한 조정·중재

② “갑”과 “을”은 조정이 불성립하거나 「중재법」제 33 조 제 2 항에 의한 중재절차의 종료결정시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소송의 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③ “갑”과 “을”은 지식재산권 등 공동기술개발 성과물과 관련하여 제 3 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이를 협의하여 처리한다.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본 계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각각 1 부씩 보관한다.

2022 년 8 월 21 일

(갑) 회사명 : (주)제이비케이랩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64, 2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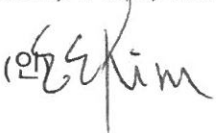
대 표 : 장 봉 근



JEBK LAB

(을)성명: 김의신

주소: 5126 Scholarship Irvine, CA 92621, USA

서명: 김의신 (인) 

JENLAB